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

행정(1)부시장 ·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시장 ·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
(제71조제6항 관련)

해당 시 · 도	행정(1)부시장 · 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 · 행정(2)부지사	비 고
서울특별시	기획 · 예산관리, 감사, 비상기획, 행정관리, 보건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 교통 및 민방위분야 업무	도시계획 · 건설, 상하수도, 주택 및 소방 · 방재분야 업무	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 · 예산 관리업무를 직접 관장할 수 있다. 2.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평택시 · 안산시 · 과천시 · 오산시 · 시흥시 · 군포시 · 의왕시 · 하남시 · 용인시 · 이천시 · 안성시 · 김포시 · 여주시 · 화성시 · 광주시 · 양평군 지역에 대한 도 사무의 총괄	의정부시 · 동두천시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파주시 · 양주시 · 연천군 · 포천시 · 가평군 지역에 대한 도 사무의 총괄	1.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사무의 경우에는 행정(1)부지사가 총괄하며, 행정(2)부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